

부산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6214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D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26.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10423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E 사이에 2020. 1.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재산이다’를 ‘재산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설령 제1심판결문 기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 명의로 제2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더라면 그 임대차보증금은 소액보증금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원고가 E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지 제2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 아니므로 E가 피고에게 증여한 16,000,000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실제로 제2아파트 임대차계약체결의 당사자는 피고이지 E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가정적으로 피고의 주장을 ‘제1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잔액 중 16,000,000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된 소액보증금으로 원고와 같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선행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E가 피고에게 증여한 16,000,000원이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범위가 변경될 수도 있고, 이는 집행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 압류금지채권을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처분을 일률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의 압류금지채권 변경신청권 행사는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임을 고려하면, 이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일단 회복시키는 것이 곧바로 채무자의 기초생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다(책임재산으로 회복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의 변경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여전히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밝혀졌거나 이를 사해행위의 대상으로 보아 취소하는 것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마저 저해하여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명, 판사 정일예, 판사 서호원